

2020년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2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55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44건(안건번호 제2020-11086호~1270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1086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카페 게시물(게시글, 댓글)을 크롤링한 사안임. ○○○○ 카페 ‘●●●●’와 ‘○○○○’ 게시물 묶음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면 민원인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함.

안건번호 제2020-12698호~12709호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1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

한 37건(안전번호 제2020-1599호~1635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2개 안전
은 가결하고, 나머지 25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5개 안전)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5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위원님 성함, 6쪽의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제목, 제품 관련 정보, 6쪽~7쪽의 민원인 주장 내용, 7쪽의 제품명, 계약서 내용, 7쪽~8쪽의 확인서 내용, 8쪽의 이메일 내용, 9쪽의 게시물 내용, 어플리케이션명, 이메일 내용, 링크, 10쪽의 제품명, 13쪽의 사이트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14쪽의 사이트명,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 저자명, 18쪽~19쪽의 저작물명, 20쪽의 게시물 제목, 채널명, 민원 신고 내용, 22쪽의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5쪽~37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민원 내용과 관련되어 있음.

- B 위원: 같은 의견이며, 정보 제공 청구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같은 의견임.
- D 위원: 동의함. 다만 회의록 11쪽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수정하도록 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위원님 성함,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제목, 제품 관련 정보, 민원인 주장 내용, 제품명, 계약서 내용, 확인서 내용, 이메일 내용, 게시물 내용, 어플리케이션명, 링크, 사이트명, 저작물명, 저자명, 채널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5쪽~37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11086호~1270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244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1086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민원인 회사가 신고한 건임.
 (안전번호 제2020-11086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 사이트 운영자는 민원인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인 '○○○○' 카페 '◎◎◎◎'의 '◇◇◇◇', '◆◆◆◆', '□□□□' 게시판과 카페 '●●●●'의 '■ ■ ■ ■', '△ △ △ △', '▲ ▲ ▲ ▲', '▽ ▽ ▽ ▽', '▼ ▼ ▼ ▼' 게시판 등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크롤링하고 있음.
 해당 두 카페는 각각 카페 순위 1위, 3위임. '●●●●' 가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 ■ ■ ■', '▽ ▽ ▽ ▽'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의 생년, 성별 부분 제출 등 성인 인증을 받는 '등급업'이 필요함.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 게시판은 '우등회원' 이상 회원이 이용할 수 있음. '☆☆☆'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사이트로 보임. '☆☆☆' 사이트의 게시물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음. ○○○○ 입장에서 카페 회원 이탈과 광고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본 건의 쟁점은 해당 두 카페의 게시물 묶음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면 민원인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이와 더불어

어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에 해당하는 게시물 단위에 대한 시정권고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묶음에 대한 시정권고가 되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내지 사이트 접속차단과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먼저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음. 저작권법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함.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일종의 독자적 권리의 대상으로 보호되는 것이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함.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법원은 이른바 '잡코리아' 사건에서 '잡코리아' 웹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잡코리아(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판결문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해당 여부에 “원고가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음.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법원은 이른바 '엔하위키' 사건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음. 판결문 논리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에 “게시물 대부분은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라는 내용이 있음.

‘엔하위키’ 사이트 운영자와 민원인 회사 사이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민원인 회사에 해당 판결문을 보내고 관련 내용의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임.

다음 쟁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임. 이 부분은 지난주 제2020-55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쟁점이므로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되는 시정권고 심의 선례는 존재하지 아니함.

- C 위원: 민원인 회사가 민·형사상의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는지 의문임.
- B 위원: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음.
- D 위원: ‘☆☆☆’ 사이트는 출처를 제공하고 있고, ○○○○ 카페뿐만 아니라 ♪♪♪♪의 게시물, 신문 기사도 크롤링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는 나름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
- A 위원: 민원인 회사도 이와 동일하게 커뮤니티 게시물을 긁어 와

종합해서 제공하는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 해당 사안과의 차이점은 '★★★'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고, '☆☆☆' 사이트는 등급 등이 필요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 사이트는 ○○○○ 카페에서 이미 인용해 온 게시물을 다시 재인용한 것으로 보임.

'☆☆☆' 사이트는 게시물을 재인용하고 있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생각함. 물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함.

- B 위원: 두 카페의 게시물 묶음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카페 글이 오롯이 '○○○○'이나 '♣♣♣♣'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 A 위원: 이용 약관상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로 알고 있음.

- D 위원: 비배타적 권리인 것으로 보임.

- A 위원: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가 문제임.

- 성원영 전문위원: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게시글이 아니라 카페 내 게시물 전체로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동일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상존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아키텍처가 같아야 함. 해당 사안은 게시물을 긁어와 회원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식인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엔하위키’ 사건에서도 게시물을 긁어왔는데 미러링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음.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는 기술적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다를 수 있음.
- A 위원: ‘엔하위키’ 사건의 경우에는 엔진이 똑같다고 알고 있음. ‘○○○○’ 카페와 ♣♣♣♣의 구조는 서로 다름.
- D 위원: ‘엔하위키’ 사건의 경우는 약간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엔하위키’ 사건은 동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카피해서 들고 나간 것임.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가 똑같음. 크롤링과는 다른 것임.
- D 위원: 개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규제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음.
- A 위원: 애매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미러링과 크롤링은 차이가 있음. 미러링은 댓글을 포함하여 똑같이 그대로 복제한 것을 말함. 미러링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인 회사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줘야 함.
- A 위원: 백업이라고 보면 됨.
- D 위원: 민원인 회사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준 다음 링크가 들어가야 똑같이 가져올 수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는 미러링은 아닌 것으로 보임.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정도로 생각함.
- C 위원: 해당 사안은 '잡코리아' 사건과 '엔하위키' 사건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만약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더라면 감정이나 전문가의 진술 등을 했겠지만 해당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라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게시물 묶음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민원인 회사가 민·형사상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엔하위키' 사건도 초창기에 자신들의 데이터가 몇 건 들어가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 이용자들이 업데이트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었음. 민원인 회사에서 카페 운영, 유지 보수, 보안 및 방화벽 설치를 했다면 '엔하위키' 사건과 달리 볼 이유가 있나 싶음.
- C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민원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정도가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거나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 A 위원: 기술성, 독창성 부분보다는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아야할 것 같음.
- C 위원: 스토리지 등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인 것임. 이 정도도 투자하지 않는 IT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싶음.
- D 위원: 동의함. 일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 카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정도만 가지고 카피했다고 보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에서는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가 아님. 인적, 물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A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 사이트에서 긁어 가 게시물 자체가 카페에서도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게시물이라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 '☆☆☆' 사이트는 카페의 게시물 묶음을 실시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함.
- D 위원: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게시물을 통으로 가져간 콘텐츠가 문제가 되려면 카페 전체 게시판의 배열, 리스팅 등을 그대로 가져가서 재현해야 함. 일부 게시판의 게시물을 가져간 것을 데이터베이스 문제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하지만 게시판의 게시물 전부를 실시간으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카페 게시물을 전부 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임. 게시물 하나만 가지고 가는 포맷이지 전체적인 카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데이터베이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사이트를 제시하면서)‘☆☆☆’ 사이트 자체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직접 올린 글이 하나도 없음.
- B 위원: 카페 게시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 사이트에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사이트를 제시하면서)지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 D 위원: 반드시 실시간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개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보이는 ‘☆☆☆’ 사이트에서 자기 나름대로 게시물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항목별로 나눠서 게시물을 가져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부정경쟁방지법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잡코리아'는 틀을 제공하고 구인 업체들이 정보를 입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 것임. '엔하위키' 사건에서도 이용자들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음.
- D 위원: '☆☆☆' 사이트 게시물 하단의 댓글 작성자인 'ㄱㄱㄱ', '♣♣♣' 등은 아이디가 아닌 텍스트로 보임.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 와서 자신의 매크로에서 재구성한 것임. 반면 카페 게시물의 댓글에 해당 아이디는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찍힘.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임.
- A 위원: 저작권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 불법성 인정 내지는 막아야 한다고 하면 '☆☆☆' 사이트 폐쇄 명령과 똑같은 것임. 시정권고로 사이트 폐쇄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함.
- B 위원: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로 기재되어 있음. 카페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민원인 회사 내에서 왜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는지 의문임.
- A 위원: 예를 들어 비공개 게시물까지 검색결과가 오픈된다고 하면 동일한 케이스로 다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장에서는 크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민원인 회사가 제공하는 '★★★'라는 서비스가 소재별로 나

뉘져 있는 게시물 그 자체를 크롤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

- A 위원: 원 게시물의 공개 여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 앱 서비스도 타 사이트의 게시물 자체를 그대로 긁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원인 회사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사이트의 게시물은 조회 수가 높지 않고 광고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익도 커 보이지 않음. '○○○○'이 직접 기술적으로 아이디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입장에서는 누가 크롤링했는지 알 수 있을지 의문임.
- A 위원: 서버 아이피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임. '○○○○'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108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1086호의 경우 콘텐츠 소유를 한 권리자의 문제 제기가 아닌 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문제 등의 쟁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해당 안전을 부의함.
- D 위원: 해당 안전은 개인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의 게시물을 무단 게시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저작물의 문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카페 게시물이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본 건은 '잡코리아', '엔하위키'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원과 같은 증거조사가 어려워 해당 부분을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전체회의에 본 건을 회부하여 논의함이 타당함.
- B 위원: '○○○○' 카페 글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해당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다만 이에 대해 이견이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므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0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보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2698호~127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사의 'Autodesk Revit', 'AutoCAD', '어도비'사의 'Premiere Pro',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13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해당 불법복제물은 시리얼, 제품 키가 제공되어있거나 무설치·자동인증 프로그램, 크랙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음.

Autodesk Reivit, AutoCAD, AutoCAD Electrical, Naviswork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Premiere Pro, Photoshop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는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2698호~1270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동의함.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698호~127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087호~1269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수: 임영웅)'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112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7.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데스매치 PART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데스매치 PART1, 데스매치 PART2'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다수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1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원곡 실연자는 가수 '조용필'임.

(음악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가수: 임영웅)'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115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 에이드 베스트'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음원]미스터트롯-모음집'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12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36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원곡 실연자는 가수 '김광석'임.

(게임 '블랙 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302호는 2020. 3. 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58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0,500원이고, 배급사는 'Crowbar Collective'임.

(게임 '플롯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324호는 2019. 9. 2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6,000원이고, 배급사는 '콩그레게이트'임.

(게임 '뚝 이터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355호는 2020. 3. 20.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8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67,000원이고, 배급사는 '베데스다 소프트웨어스'임.

(만화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출판 : 소미미디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488호는 웹하드에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2화 압축 파일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6,300원임. 최근 불법복제물로 자주 보이고 있음.

(만화 '29세 독신 중견 모험가의 일상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530호는 웹하드에서 '29세 독신 중견 모험가의 일상' 1화부터 50화, 번외편, 특별편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2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4,950원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2020. 2. 6.에 발매되었고, 총 4권으로 미완결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778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0.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65호는 2020. 4. 29. 개봉 예정인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18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에는 번역 자체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영화의 국내 배급사는 '(주)이수C&E'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1087호~1269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해당 안건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동의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087호~1269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086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11087호~1270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1면부터 28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2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